

2025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계약직 근로자 채용 변경공고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5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계약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.

2024 년 12 월 12 일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



1. 채용 분야 및 인원

분 야	인 원	업무내용
수익사업 발굴 및 관리 총괄 (대리)	1명 (계약직)	· 카페 운영 총괄, 다회용기 및 행사용품 렌탈 사업 관리 · 복지 관련 수익사업 발굴 추진 및 기타 본사 업무 지원 (구 대행사업)
카페 및 휴양림 운영지원 (사원)	1명 (계약직)	· 신규 개점 카페 운영지원 · 동막골 휴양림 관리지원(인력 관리, 예약 등) · 기타 본사 업무지원

※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, 근무장소, 근무시간 변동 가능

※ 주식회사 특성상 본사를 비롯한 타 사업장 근무 가능

2. 응시자격

- ☐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자(2004.12. 이전부터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☐ 신체 건강한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
- 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
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☐ 필수 자격
 - 수익사업 발굴 및 관리 총괄 - 바리스타 자격증,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,
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
 - 카페 및 휴양림 운영지원 - 바리스타 자격증,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
 - 전 분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

<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>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
4.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

☐ 우대사항(계약직에 한함) [판단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.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]

1) 어르신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

2) 자차 소유자

3) 카페 근무 경력자

※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

3. 근로조건

☐ 수익사업 발굴 및 관리 총괄 / 카페 및 휴양림 운영지원 분야

○ 보 수: 회사 내부규정에 따름

○ 계약기간: 2025. 1. 1. ~ 2025. 9. 30. (계약직 근로자)

○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

4. 원서접수

☐ 접수기간: (기존) 2024. 12. 5.(목) ~ 2024. 12. 11.(수) / 주말·공휴일 제외
(변경) 2024. 12. 12.(목) ~ 2024. 12. 18.(수) / 주말·공휴일 제외

☐ 접수시간: 09:00~17:00

☐ 접수방법: 방문 및 이메일 접수

☐ 주 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(상계동, KB금융노원플라자)

☐ 이 메 일: nowon0419@naver.com

☐ 제출서류

* 공통서류: 지원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,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

* 개별사항: 자격증 사본 등

5. 심사방법

☐ 1차 심사: 서류전형

-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

※ 서류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 (기존) 2024. 12. 13. (금) / (변경) 2024. 12. 20. (금)

☐ 2차 심사: (기존)2024. 12. 17. (화) / (변경) 2024. 12. 24.(화)

- 개별면접

- 면접 방법: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

① 직무 파악 (20점) ② 인성 (20점) ③ 업무추진능력 (20점)

④ 발전가능성 (20점) ⑤ 자세 및 태도 (20점)

※ 면접 일시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☐ 최종 합격자 결정 : 2024. 12. 20. (금) / (변경) 2024. 12. 27.(금)

-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

- 제출 서류 : 등본, 통장 사본, 건강검진서류
- ※ 채용예정인원 2명 (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.)

6. 기타(유의)사항

- ☐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☐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☐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☐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☐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,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)
- ☐ 제출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
- 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(☎ 070-4159-485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